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866,780,000	26,003,400
일반회계	641,580,000	19,247,400
특별회계	225,200,000	6,756,000
기타특별회계	225,200,000	6,756,000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089,291	32,679
주차장특별회계	495,928	14,878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729,321	81,88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4,186,013	4,325,58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679,734	50,392
치수사업특별회계	212,207	6,36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39,547	4,186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74,666,590	2,239,998
도시개발특별회계	1,369	41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3,070,477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 재난목적예비비는 1,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수 있다.

제 7 조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회계년도 중에 교부되는 국·도비,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